

# 예산총칙

200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324,415,221 | 9,732,457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| 248,490,869 | 7,454,726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| 75,924,352  | 2,277,731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| 7,139,203   | 214,176   |
|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| 7,139,203   | 214,176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68,785,149  | 2,063,554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2,917,118   | 87,514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  | 488,506     | 14,655    |
|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884,465     | 26,534    |
|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| 26,259,860  | 787,796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10,395,396  | 311,862 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10,719,523  | 321,586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2,086,231   | 62,587   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14,413,106  | 432,393   |
|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        | 532,088     | 15,963   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             | 88,856      | 2,666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생 략"

제 4 조 "생 략"

제 5 조 "생 략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10,78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